

제1929호

고양시보

2022년 11월 22일(화)

차 례

훈 령

고양시 훈령 제395호 고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2-365호 도시계획시설(소로1-236호선 외 1개소)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5

고양시 고시 제2022-366호 도로구간 폐지 고시 4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2-2867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43

고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395호

고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부서의 팀장 또는 업무 담당자로”를 “해당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로 한다.

- ① 시장은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둔다.
-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영 제22조에 따른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
-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영 제31조에 따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능)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을 “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 을 “호선(互選)” 으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표위원: 소관부서의 장
2. 위원: 중대산업재해예방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제13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아니 된다” 를 “안 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 대표는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은 사용자 대표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명 철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쌍방” 을 “양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최” 를 “개의를(開議)”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임명” 을 “지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 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채용 및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작업별 안전·보건 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의”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를 “영”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발부” 를 “발급”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별표 3과 같이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를 “설치·부

착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과 같다”를 “규칙 제38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시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고양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 제189조부터 제19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규칙 제194조의2에 따른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질병으로써”를 “질병으로서”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

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 대하여”를 “근로자에게”로 하고,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한”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부서장(직위)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재 복
	팀 장(직위) 성 명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유 병 준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규 리 (031-8075-2989)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u>제3조(적용범위)</u> 이 규정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u>제3조(적용범위)</u> ① 이 규정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u>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u>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u>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u>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

현행	개정
<u>관한 사항</u> 6. <u>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u> 7. <u>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u> 8. <u>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구입할 경우에 적격품 여부 확인</u> 9. <u>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② (생략) 제7조(관리감독자) ① <u>시장은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둔다.</u> 1. <u>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u> 2. <u>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u> 3. <u>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u> 4. <u>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u> 5. <u>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u> 6. <u>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u> 7. <u>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② <u>관리감독자는 부서의 팀장 또는 업</u>	② <u>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다.</u> ③ (현행 제6조제2항과 같음) 제7조(관리감독자) ① <u>시장은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둔다.</u> ② <u>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u> ③ -----<u>해당 업무와 그 소속</u>

현행	개정
<u>무 담당자로 한다.</u> 제8조(안전관리자) ① (생략)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u> 2. <u>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u> 3. <u>안전인증 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적격품의 선정</u> 4. <u>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u> 5. <u>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u> 6. <u>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사항</u> 7. <u>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사항</u> 8.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9. <u>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u> 10. <u>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제9조(보건관리자) ① (생략)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업무</u> 2. <u>보호구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u> 3. <u>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u> 4. <u>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u>	<u>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으로----</u>. 제8조(안전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영 제22조에 따른다.

현행	개정
<u>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u> 5. <u>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u> 6. <u>근로자 보호를 위한 외상 치료,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u> 7. <u>작업장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u> 8. <u>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u> 9. <u>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u> 10. <u>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u> 11. <u>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u> 12. <u>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u> 13. <u>그 밖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u> <u>제10조(산업보건)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u> 1. <u>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u> 2. <u>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u> 3. <u>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u>제10조(산업보건)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u>

현행	개정
② (생략) <u><신설></u>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능) ① <u>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고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u> <u>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u> <u>6. 중대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u> <u>8.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u> <u>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u>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대표위원: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영 제31조에 따른다.</u>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능) ① <u>시장은 법 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 ② <u>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 ----- -----<u>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u>-----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② 사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표위원: 공무직 담당과장 2. 위원: 공무직운영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③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② 사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표위원: 소관부서의 장 2. 위원: 중대산업재해예방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③ -----호선(互選)----- ----- -----.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한다. ② 근로자 대표는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 ----- -----안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사용자대표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2(지명 철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위원직

현행	개정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생략) ② 임시회의는 노사 <u>쌍방이</u>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최</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위원장이 <u>임명</u>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7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생략) ② 관리책임자는 4분기 중 다음 년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양쪽----- ----- -----. ③ ----- -----개의(開議)-----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 ----- -----지명-----. ② (삭제) 제17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안전보건관리책임자</u>-----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현행	개정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생략) 제21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③ (현행 제20조제2항과 같음) 제21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 및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

현행	개정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특별교육) ① (생략) ② (생략) ③ 특별교육 대상 및 작업별 교육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교육기록) ① (생략) 1. ~4. (생략)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서명부 등) ② (생략) 제26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0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지시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9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2조(특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24조(교육기록)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② (생략) 제26조(방호조치) ① ----- -영-----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점검) ① ----- ----- ----- -----발급-----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30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① 시장은 유해한 사업장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안전보건표지를 <u>별표 3과 같이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u>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u>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u>별표 7과 같다.</u> 제3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특수건강진단: <u>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u> 3. ~ 5. (생략) ③ 근로자는 <u>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생략) 제33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시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u>시행령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① ----- ----- ----- -----<u>설치·부착</u> <u>해야-----.</u> ② ----- ----- ----- -----<u>규칙 제38조에 따른다.</u> 제3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u>현행과 같음</u>) ② (<u>현행과 같음</u>) 1. (<u>현행과 같음</u>) 2.-----<u>규칙</u>----- ----- ----- 3. ~ 5. (<u>현행과 같음</u>) ③ ----- ----- <u>안된다.</u> ④ (<u>현행과 같음</u>) 제33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시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u>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u>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고양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u>규칙 제189조부터 제190조의 규정을 따른다.</u>

현행	개정
<u><신 설></u> 제35조(보호구의 보급 및 착용) 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생략) 1.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u>질병으로써</u>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생략) 제38조(사고 및 재해발생 시 조치) ① ~ ② (생략)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실	제33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규칙 제194조의2에 따른다. 제35조(보호구의 보급 및 착용)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 ----- ----- 안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질병으로서-----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사고 및 재해발생 시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규칙 별지 제30호서식</u>----- ----- -----. 제41조(포상) ① -----

현행	개정
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u>근로자에 대하여</u>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u>포함</u>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42조(문서보존) 시장은 법 제164조 및 <u>시행규칙</u> 제24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변경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변경하고자</u> 할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u>근로자에</u> <u>게</u>----- -----<u>포함</u>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문서보존) ----- -<u>규칙</u>----- -----. 제43조(변경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u>변경한</u>----- ----- ----- -----.

현행	개정										
[별표 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및 작업별 교육내용(제22조 관련) 1. 공통사항 <table border="1" data-bbox="183 483 1108 764"> <thead> <tr> <th>작업명</th><th>교육내용</th></tr> </thead> <tbody> <tr> <td>특별교육대상 전체작업</td><td>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작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td></tr> </tbody> </table> 2. 작업별 교육내용 <table border="1" data-bbox="183 849 1108 1359"> <thead> <tr> <th></th><th></th></tr> </thead> <tbody> <tr> <td> <개별내용> 1. 고압설 내 작업(접합공법이나 그 밖의 임가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설 또는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td><td>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임가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td><td> ○ 용접 흡,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용접기, 호스 및 회관(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body> </table>	작업명	교육내용	특별교육대상 전체작업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작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1. 고압설 내 작업(접합공법이나 그 밖의 임가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설 또는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임가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흡,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용접기, 호스 및 회관(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작업명	교육내용										
특별교육대상 전체작업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작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1. 고압설 내 작업(접합공법이나 그 밖의 임가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설 또는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임가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흡,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용접기, 호스 및 회관(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81 296 488 496">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td><td data-bbox="488 296 1106 496">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기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496 488 871"> 4. 폭발성·유발용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td><td data-bbox="488 496 1106 871"> ○ 폭발성·유발용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871 488 1050"> 5. 인화성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td><td data-bbox="488 871 1106 1050">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1050 488 1345">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 </td><td data-bbox="488 1050 1106 1345"> ○ 각 제작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동식상·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able>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기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유발용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유발용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인화성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	○ 각 제작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동식상·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기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유발용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유발용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인화성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	○ 각 제작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동식상·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원뿔 모양으로 된 저장탱크)·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 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외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機)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 - 가선 - 운반기구 - 지주 및 이들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달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통기계, 락톱기계, 대패기계, 모래깎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 등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14. 1톤 이상의 크레인용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기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절고리 -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된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탈기제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철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제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환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기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환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환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기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동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등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등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깔릴 밀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기추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두너뜨리는 작업(하역기제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25. 기둥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제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제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계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견립 및 비탈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견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용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81 296 488 715">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권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td><td data-bbox="488 296 1104 715"> ○ 기계 및 기기 집화장치 제촉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715 488 874"> 32. 제이저 압박을 제조·제조·제조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박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td><td data-bbox="488 715 1104 874">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박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874 488 1034">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td><td data-bbox="488 874 1104 1034">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1034 488 1193"> 34. 벤홀작업 </td><td data-bbox="488 1034 1104 1193">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1193 488 1353">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td><td data-bbox="488 1193 1104 1353">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able>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권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집화장치 제촉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제이저 압박을 제조·제조·제조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박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박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벤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권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집화장치 제촉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제이저 압박을 제조·제조·제조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박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박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벤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81 293 488 464">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td><td data-bbox="488 293 1111 464">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464 488 612">37. 로봇작업</td><td data-bbox="488 464 1111 612">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612 488 761">38. 석면해체·제거작업</td><td data-bbox="488 612 1111 761">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761 488 1083">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td><td data-bbox="488 761 1111 1083">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data-bbox="181 1083 488 1331">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및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td><td data-bbox="488 1083 1111 1331">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있었을 때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d></tr> </table>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및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있었을 때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및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있었을 때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

<삭 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제30조 관련)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굴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경고	202 산화성물질경고	203 폭발성물질경고	204 급성독성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경고	206 방사성물질경고
207 고압전기경고	208 매달린물체경고	209 낙하물경고	210 고온경고	211 차운경고	212 물결형상물질경고	213 레이저광선경고	214 발암성·변이 원성·생식독성 전신독성·호흡 기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착용	302 방독마스크착용	303 방진마스크착용	304 보안면착용	305 안전모착용	306 귀마개착용
307 안전화착용	308 안전장갑착용	309 안전복착용	4 안내표지	401 복합자표지	402 응급구조 표지	403 물길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화속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의 출입금지	501 해가대상물질작업정 관계자의 출입금지 (허가물질 발행)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을 금지	502 석면허급/해제작업정 관계자의 출입금지 석면 허가/해제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을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행 및 관계자의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을 금지	6 문자 추가시 예시문	 화기엄금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가정이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의 실수로써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의 방식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현행	개정																																										
별표 4] 개인 보호구 지급기준(제35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 분</th><th>보호구 명</th><th>지 급 기 준</th></tr><tr><td>신체 보호구</td><td>보호복</td><td>산·알칼리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분진 취급 또는 발생 작업장</td></tr><tr><td rowspan="2">눈 보호구</td><td>일반보안경</td><td>선반, 밀링, 연마 등 공작기계에서 따라 발생하는 칩, 금속 분진 및 스크랩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칩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 발생하는 분진, 미스트가 비산되거나 발생하는 작업장</td></tr><tr><td>차광보안경</td><td>전기·가스용접, 용단 작업 시 유해광선 발생 작업장</td></tr><tr><td rowspan="2">호흡기 보호구</td><td>방진마스크</td><td>유해분진, 미스트 발생 작업장</td></tr><tr><td>방독마스크</td><td>유기용제,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시 분진, 미스트, 가스발생작업장</td></tr><tr><td>귀 보호구</td><td>귀마개,귀덮개</td><td>귀마개(80dB 이상), 귀덮개(90dB 이상)</td></tr><tr><td rowspan="2">안전 보호구</td><td>일반보안면</td><td>고체소립자, 금속파편, 유해화학물질 비산 작업장</td></tr><tr><td>용접보안면</td><td>전기·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및 불꽃비산 작업장</td></tr><tr><td rowspan="2">발 보호구</td><td>안전화</td><td>공방물 취급 또는 공작질, 스크랩 발생 작업장</td></tr><tr><td>절연장화</td><td>환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작업장</td></tr><tr><td rowspan="2">손 보호구</td><td>용접보호장갑</td><td>전기·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발생 및 고열취급 작업장</td></tr><tr><td>절연장갑</td><td>환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전기회로 작업장</td></tr><tr><td>머리 보호구</td><td>안전모</td><td>고소작업, 전기, 고열, 크레인 운전, 공방물 하역 운반 등 물체의 낙하, 비래 예상 작업장</td></tr><tr><td rowspan="2">기타 보호구</td><td>요통방지벨트</td><td>공방물들 인력으로 인양, 운반작업장</td></tr><tr><td>안전대</td><td>고소작업, 맨홀, 탱크 작업 등 추락위험 예상 작업장</td></tr></table>	구 분	보호구 명	지 급 기 준	신체 보호구	보호복	산·알칼리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분진 취급 또는 발생 작업장	눈 보호구	일반보안경	선반, 밀링, 연마 등 공작기계에서 따라 발생하는 칩, 금속 분진 및 스크랩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칩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 발생하는 분진, 미스트가 비산되거나 발생하는 작업장	차광보안경	전기·가스용접, 용단 작업 시 유해광선 발생 작업장	호흡기 보호구	방진마스크	유해분진, 미스트 발생 작업장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시 분진, 미스트, 가스발생작업장	귀 보호구	귀마개,귀덮개	귀마개(80dB 이상), 귀덮개(90dB 이상)	안전 보호구	일반보안면	고체소립자, 금속파편, 유해화학물질 비산 작업장	용접보안면	전기·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및 불꽃비산 작업장	발 보호구	안전화	공방물 취급 또는 공작질, 스크랩 발생 작업장	절연장화	환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작업장	손 보호구	용접보호장갑	전기·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발생 및 고열취급 작업장	절연장갑	환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전기회로 작업장	머리 보호구	안전모	고소작업, 전기, 고열, 크레인 운전, 공방물 하역 운반 등 물체의 낙하, 비래 예상 작업장	기타 보호구	요통방지벨트	공방물들 인력으로 인양, 운반작업장	안전대	고소작업, 맨홀, 탱크 작업 등 추락위험 예상 작업장	<삭 제>
구 분	보호구 명	지 급 기 준																																									
신체 보호구	보호복	산·알칼리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분진 취급 또는 발생 작업장																																									
눈 보호구	일반보안경	선반, 밀링, 연마 등 공작기계에서 따라 발생하는 칩, 금속 분진 및 스크랩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칩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 발생하는 분진, 미스트가 비산되거나 발생하는 작업장																																									
	차광보안경	전기·가스용접, 용단 작업 시 유해광선 발생 작업장																																									
호흡기 보호구	방진마스크	유해분진, 미스트 발생 작업장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시 분진, 미스트, 가스발생작업장																																									
귀 보호구	귀마개,귀덮개	귀마개(80dB 이상), 귀덮개(90dB 이상)																																									
안전 보호구	일반보안면	고체소립자, 금속파편, 유해화학물질 비산 작업장																																									
	용접보안면	전기·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및 불꽃비산 작업장																																									
발 보호구	안전화	공방물 취급 또는 공작질, 스크랩 발생 작업장																																									
	절연장화	환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작업장																																									
손 보호구	용접보호장갑	전기·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발생 및 고열취급 작업장																																									
	절연장갑	환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전기회로 작업장																																									
머리 보호구	안전모	고소작업, 전기, 고열, 크레인 운전, 공방물 하역 운반 등 물체의 낙하, 비래 예상 작업장																																									
기타 보호구	요통방지벨트	공방물들 인력으로 인양, 운반작업장																																									
	안전대	고소작업, 맨홀, 탱크 작업 등 추락위험 예상 작업장																																									

현행	개정														
【별지 제1호서식】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제 차(정기,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td></tr> <tr> <td>1. 개최일시</td><td></td></tr> <tr> <td>2. 개최장소</td><td></td></tr> <tr> <td>3. 참석인원</td><td>위원장 ○○○외 명</td></tr> <tr> <td>4. 심의안건</td><td></td></tr> <tr> <td>5. 주요내용</td><td></td></tr> <tr> <td>6. 회의결과</td><td></td></tr> </table>	제 차(정기,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2. 개최장소		3. 참석인원	위원장 ○○○외 명	4. 심의안건		5. 주요내용		6. 회의결과		<삭제>
제 차(정기,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2. 개최장소															
3. 참석인원	위원장 ○○○외 명														
4. 심의안건															
5. 주요내용															
6. 회의결과															

현행					개정	
[후면]						
7.참석위원 서명	근로자위원	서명	사용자위원	서명		

현행		개정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목적별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일괄) <table border="1"> <tr> <td rowspan="5">I. 사업장 정보</td> <td>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td> <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②사업장명</td> <td colspan="2">③근로자 수</td> </tr> <tr> <td>④업종</td> <td colspan="2">소재지 (-)</td> </tr> <tr> <td>⑤재해자가 사내 수용인 소속인 일부(건물임 제외)</td> <td>⑥근로자 직인</td> <td>⑦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td> </tr> <tr> <td>⑧재해자가 사내 수용인 소속인 일부(건물임 제외)</td> <td>⑨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td> <td>⑩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td> </tr> <tr> <td rowspan="4">II. 재해 정보</td> <td>발주자</td> <td colspan="2">[]기간 []작가·지발자처 탄핵 []응답기관</td> </tr> <tr> <td>⑪원수출 사업장명</td> <td colspan="2">출사현장명</td> </tr> <tr> <td>⑫원수출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td> <td colspan="2">출사현장명</td> </tr> <tr> <td>⑬출사현장명</td> <td colspan="2">출사현장명</td> </tr> <tr> <td rowspan="5">III. 재해 발생 개요</td> <td>⑭발생일시</td> <td colspan="2">[]년 []월 []일 []요일 []시 []분</td> </tr> <tr> <td>⑮발생장소</td> <td colspan="2">[]년 []월 []일 []요일 []시 []분</td> </tr> <tr> <td>⑯재해발생 개요</td> <td colspan="2">[]년 []월 []일 []요일 []시 []분</td> </tr> <tr> <td>⑰재해발생 원인</td> <td colspan="2">[]년 []월 []일 []요일 []시 []분</td> </tr> <tr> <td>⑱재발 방지 계획</td> <td colspan="2">[]년 []월 []일 []요일 []시 []분</td> </tr> <tr> <td colspan="4">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 직위: [] 작성일자: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함 (사업장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현황: [] 기입됨: [] 작성지역·행정: [] 작성지역·행정: [] </td> </tr> </table>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용인 소속인 일부(건물임 제외)	⑥근로자 직인	⑦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⑧재해자가 사내 수용인 소속인 일부(건물임 제외)	⑨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⑩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II. 재해 정보	발주자	[]기간 []작가·지발자처 탄핵 []응답기관		⑪원수출 사업장명	출사현장명		⑫원수출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출사현장명		⑬출사현장명	출사현장명		III. 재해 발생 개요	⑭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⑮발생장소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⑯재해발생 개요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⑰재해발생 원인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⑱재발 방지 계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 직위: [] 작성일자: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함 (사업장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현황: [] 기입됨: [] 작성지역·행정: [] 작성지역·행정: []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용인 소속인 일부(건물임 제외)		⑥근로자 직인	⑦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⑧재해자가 사내 수용인 소속인 일부(건물임 제외)	⑨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⑩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II. 재해 정보	발주자	[]기간 []작가·지발자처 탄핵 []응답기관																																																
	⑪원수출 사업장명	출사현장명																																																
	⑫원수출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출사현장명																																																
	⑬출사현장명	출사현장명																																																
III. 재해 발생 개요	⑭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⑮발생장소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⑯재해발생 개요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⑰재해발생 원인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⑱재발 방지 계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 직위: [] 작성일자: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함 (사업장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현황: [] 기입됨: [] 작성지역·행정: [] 작성지역·행정: []																																																		

 <삭 제> |

현행	개정
작업내용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황칠지(80g/㎡)]	

고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제3조).
-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33조).
- 바.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3조의2).
- 사. 보호구의 지급 기준을 변경함(제35조).

도시계획시설(소로1-236호선 외 1개소)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241호(2022. 7. 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7-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1-236호선 외 1개소) 사업에 대하여 지적분할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7-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소로1-236호선 외 1개소) 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소로1-236호선 외 1개소) 조성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대표 김인복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종로2가)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 조서

명 칭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능	시 점	중 점	비고
결 정	소로	1	236	10	498	국지도로	대로1-10 풍동660-8	대로3-39 풍동616-2	
금회시행	소로	1	236	10	65	국지도로	풍동688	풍동616-2	
결 정	소로	1	237	10	511	국지도로	중로2-152 풍동616-5	중로1-81 풍동1127-40	
금회시행	소로	1	237	10	96	국지도로	중로2-152 풍동616-5	풍동589-3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정면적(㎡)	금회시행면적 (㎡)	최초결정일
소로1-236호선	6,196	538	고고제2017-302호 (‘17.09.29.)
소로1-237호선	5,366	945	고고제2017-302호 (‘17.09.2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3. 7.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소로1-236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1,099	538		
1	일산동구 풍동	616-49	체	22	22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2	”	617-5	도	8	8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3	”	617-9	도	343	343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4	”	617-10	도	52	34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5	”	617-38	도	19	19	오*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 ***동 ****호(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단지)
6	”	620-1	도	17	17	이*순	일산읍 일산리 ***-***
7	”	688	구	638	95	(국)건설부	

- 소로1-237호선 (변경)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합 계				4,778	945						
합 계				945	945						변경
1	일산동구 풍동	589-8	도	33	16	김*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번길 **,***동***호(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산곡심정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정로 361번길31 (산곡동)	근저당권	
								부평동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91번길 33(부평동)	근저당권	
								부평남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번길1(부평동)	근저당권	
				김*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컴벤시아대로***번길 **,****동****호(송도동,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조*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번길 ***-**, *동***호(운남동,아마빌 리스)						
	“	589-21	도	16	16	김*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번길 **,***동***호(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산곡심정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정로 361번길31 (산곡동)	근저당권	변경
								부평동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91번길 33(부평동)	근저당권	
								부평남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번길1(부평동)	근저당권	
				김*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컴벤시아대로***번길 **,****동****호(송도동,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조*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번길 ***-**, *동***호(운남동,아마빌 리스)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2	일산동구 풍동	590-10	대	131	31	엄*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동 ****호(용종동, 추정마을아파트)	부평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19(삼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부평남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4번길 1(부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청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청천동)	근저당권 지상권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동***호(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아파트)				
	"	590-16	대	28	28	엄*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동 ****호(용종동, 추정마을아파트)	부평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19(삼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부평남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4번길 1(부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청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청천동)	근저당권 지상권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동***호(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아파트)				
3	"	590-3	도	206	191	엄*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동 ****호(용종동, 추정마을아파트)	부평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19(삼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부평남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4번길 1(부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청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청천동)	근저당권 지상권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동***호(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아파트)				
	"	590-15	도	204	204	엄*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동 ****호(용종동, 추정마을아파트)	부평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19(삼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부평남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4번길 1(부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청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청천동)	근저당권 지상권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동***호(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아파트)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	일산동구 풍동	590-5	전	40	40	김*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번길 ***,***동 ***호 (송도더샵프라임뷰25블럭)	부평동부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91번길 33(부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청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청천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안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49(주안동)	근저당권 지상권	
5	"	591-8	차	936	9	이*주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번길***(풍동)				변경
	"	591-21	차	9	9	이*주 외 2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번길***(풍동)				
6	"	591-14	전	309	21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변경
	"	591-22	전	21	21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7	"	591-15	도	63	63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8	"	591-17	전	1,450	21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변경
	"	591-24	전	21	21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9	"	591-18	전	231	81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변경
	"	591-25	전	80	80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10	"	591-19	도	32	32	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로**번길 ***(풍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30(일산동) (풍동지점)	근저당권	
11	"	591-20	도	68	68	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로**번길 ***(풍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30(일산동) (풍동지점)	근저당권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2	일산동구 풍동	616-55	임	366	342	재단법인 서울교회 청년유지 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	616-58	임	332	332	재단법인 서울교회 청년유지 재단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변경
13	"	591-16	대	913	30	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번길 ****(풍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30 (일산동)(풍동지점)	근저당권	
	"	591-23	대	31	31	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번길 ****(풍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30 (일산동)(풍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2. 11. 22. (화)
2. 효력발생일 : 2022. 11. 22.(화)
3. 고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 시 내 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5. 변 경 사 유 : 고양능곡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도면 (능곡동)

도로명	관할구역	도로구간		길이(m)	폭(m)	기초 간격(m)	기초번호	폐지 사유	고시일(효력발생일)
		기점	종점						
① 토당로(1차종속)	토당동 (능곡동)	토당동 254-1	토당동 251-32	133	8	10	126-1 → 126-26	고양 능곡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22. 11. 22.
② 토당로(1차종속)		토당동 248-16	토당동 73-4	158	8	10	138-1 → 138-72		
③ 토당로(2차종속)		토당동 73-6	토당동 73-48	93	3	10	138-20 → 138-58		
④ 지도로103번길(1차종속)		토당동 289-7	토당동 252-9	98	7	10	96-1 → 96-20		

폐지 도로구간 현황도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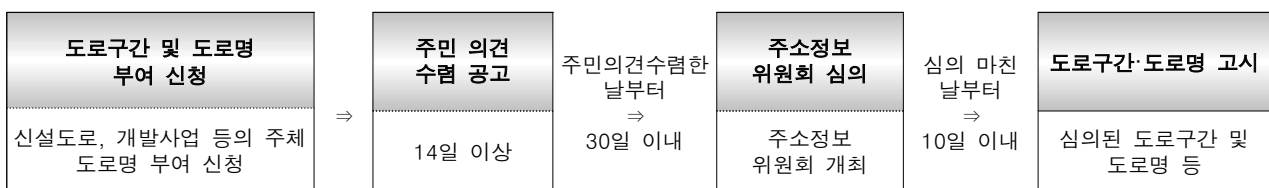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 규정에 따라 신설된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고 양 시



-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2. 11. 22. (화) ~ 2022. 12. 12. (월)
- 공고방법 : 시보 · 홈페이지 ·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대상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신설된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안) 및 도로명 부여(안)
- 공람내용 : 별첨된 조서
- 의견서 제출방법 : 고양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 우편 · 팩스 접수
 - 우편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팩스) : ☎031-8075-3096 (Fax : 031-8075-4935)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절차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붙임 1)

○ 위치도



○ 예비도로명

연 번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1안	한세로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의미,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의지 표현	
2안	라온로	“즐거움”의 순우리말, 지역 산업(문화콘텐츠)의 특색 반영	
3안	신장항로	장항지구 신도시 중심을 지나는 도로 의미	

○ 도로구간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 위계	도로구간						비 고
			기 점	종 점	기초번호	기초번호 간격	폭 원	길 이	
1	일산동구 장항동	로급	장항동 636-12	장항동 522-40	1 → 184	20m	30~40m	1,833m	

□ 붙임 2)

○ 위치도



○ 예비도로명

연 번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1안	한가람로	인접 지명인 한강(漢江)의 우리말 명칭 활용	
2안	늘봄로	언제나 봄처럼 활기차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	
3안	상록로	교육시설과 인접한 도로로 청년의 푸름을 상징	

○ 도로구간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 위계	도로구간						비 고
			기 점	종 점	기초번호	기초번호 간격	폭 원	길 이	
1	일산동구 장항동	로급	장항동 626-9	장항동 535-17	1 → 184	20m	20~30m	1,842m	

□ 붙임 3)

○ 위치도



○ 예비도로명

연 번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1안	한나래로	한국문화(한류)의 희망한 미래를 날개(나래)로 표현, 지역 산업(문화콘텐츠)의 특색 반영	
2안	한빛로	한국문화(한류) 빛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 지역 산업(문화콘텐츠)의 특색 반영	
3안	한중로	한국문화(한류)의 중심지라는 의미, 지역 산업(문화콘텐츠)의 특색 반영	

○ 도로구간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 위계	도로구간						비 고
			기 점	종 점	기초번호	기초번호 간격	폭 원	길 이	
1	일산동구 장항동	로급	장항동 660-4	장항동 659-19	1 → 28	20m	30m	274m	

도로명(안) 의견서

대상 도로명					
도로명 요청 (안)					
그 사유 및 의견					
의견제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		연락처	
주소 (사업장)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며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재해주세요